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5.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9.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9.9.10.  
다. 상정일자: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9.9.25.)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 가. 제안이유

마포구 구립실버합창단의 창단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합창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목 변경
  - 2) 구립예술합창단 중 구립실버합창단 신설(안 제2조)
  - 3) 실버합창단 정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4) 실버합창단 단원 자격 조항 신설(안 제7조)
  -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정비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 본 조례 제정안은

- 기존의 조례가 구립 합창단의 구성에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노년층으로 구성된 구립실버합창단을 창단하고 이의 운영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각의 합창단 명칭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통칭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 조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3호에 구립실버합창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기존의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자격과 더불어 실버 합창단원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고 규정함.
- 나머지 개정안은 본문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모두 “구립 예술합창단”으로 그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한 것임.

#### ○ 검토 결과

- 최근 고령사회의 대안으로 50대 이상의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에서 노년층의 문화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구립합창단의 구성에 실버합창단을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버합창단의 운영으로 노년층의 고립감, 상실감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아

- 정체성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다만, 모든 국민은 성별, 세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하단 「문화 기본법」 제4조, 제5조 참조) 관련 부서에서는 구립예술합창단의 구성 등에 특정 집단만의 참여를 경계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우리 사회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 관련 법령 】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기존 구립합창단이 실버 합창단의 신규 창설 등 구립예술합창단으로의 규모의 확대도 좋으나 각각의 합창단 운영 내실화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지난 2016년부터 각 주민센터별 주민이 주축이 되어 생활예술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역문화 공동체 역할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꿈의 합창단’ 등 소규모 주민 합창단의 지원·육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버 합창단이 창단될 경우 예상되는 제반 비용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 자료】

###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방법: 마포문화재단 위탁 운영
- 관련근거: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 위탁기간: 2017. 10. 1. ~ 2020. 9. 30.[3년]
- 예산: 142,000 천원(2019년 기준, 민간위탁금)

#### 합창단 현황

구 분	구립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일	2003.05.27	2004.12.13
단원 (2019.1.현재)	24명 (정원 60명 이내)	47명 (정원 80명 이내)
단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지휘자	김진수	길현미
반주자	정현정	김유나
2019년 총무	최연실(알토 단원)	김영지(성연두 단원 자모)
정기연습	매주 월·수요일 10:00-13:00 스튜디오2(필요 시 추가연습)	매주 화요일 18:00-20:30 스튜디오2(필요 시 추가연습)
2019년 예산	72,260천 원	69,740천 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19-112
번 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9. 9. .

발 의 자 : 강명숙 외 1명

## 1. 수정이유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제5조제3항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실버 합창단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를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합창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이”를 “한다)은 구립예술합창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청장은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민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로, “구민화합”을 “지역주민간 화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

타”를 “그 밖에”로, “판단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각각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 등”을

“구립예술합창단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약간의 임원”을 “임원”으로 한다.

제6조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단원의 자격)”을 “(단원 등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합창단”을 “합창단원”으로, “구민(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구민이 아니어도 됨)”을 “구민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3. 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반주자는 반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라”를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으로, “자는 해당년도”를 “해당년도”로,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을 “제1항제2호의 단원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를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원으로서”를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각각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지도 · 감독하게 할”을 “지도 · 감독할”로 한다.

제13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를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활동”으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u>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합창단과 서울특별시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u>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가 설치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  <u>&lt;신 설&gt;</u></p> <p>제3조(운영) ① <u>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설치·운영한다.</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u>  <u>설치·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u>-----  ----- 필요 -----.</p> <p>제2조(명칭)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이하 "구립예술합창단"이라 한다)</u>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  3. <u>서울특별시 마포구립실버합창단(이하 "실버합창단"이라 한다)</u></p> <p>제3조(운영) ① <u>서울특별시</u> -----  -----  ----- 한다)은 <u>구립예술합창단</u>을 -----.</p>

② 구청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제5조(구성)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각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단

② ----- 구립예술합창단-----  
-----  
-----  
-----.  
-----.

③ ----- 구청장  
은 구립예술합창단-----  
-----  
-----  
-----.

제4조(기능) 구립예술합창단-----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 지역 주민간 화합-----
3. 그 밖에 ----- 인정 하는 -----

제5조(구성) ① 구립예술합창단-----  
-----  
-----.

② 구립예술합창단-----  
-----.  
-----.

에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장이 된다.

③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 등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각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①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구민이 아니어도 됨)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3. 반주자는 음악반주에 능력과

-----.

③ 구립예술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④ 구립예술합창단은 효율적인 운영----- 임원-----

제6조(단장의 직무) ----- 구립예술 합창단-----  
-----  
-----.

제7조(단원 등의 자격) ① 구립예술 합창단 -----.

1. 합창단원-----  
--- 구민으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및 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 한다.

3. 실버합창단은 만 56세 이상 만

## 경험이 있는 자

②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 지휘자 및 반주자의 자격은 제  
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상한연령에  
달하는 자는 해당년도 12월31일자  
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2  
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  
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촉) ①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될 것으로 본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반주자는 반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의  
단원은 -- 해당년도 -----  
----- 제1항 제2호  
의 단원은 -----  
-----

제8조(위촉) ①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  
----- .

② 구립예술합창단의 지휘자, 반  
주자 및 \_\_\_\_\_

## 제9조(해촉) ----- -----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1. · 2. (생 략)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관리·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수탁자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할 때는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

1. · 2. (현행과 같음)

3. 구립예술합창단-----

구립예술합창단-----

4. 그 밖에 구립예술합창단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구립예술합창단-----

② ----- 구립예술합창단-----

③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④ (현행과 같음)

⑤ ----- 구립예술합창단-----

-----

-----

제11조(지도·감독) ----- 구립예술합창단-----

-----

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지휘자, 반주자, 단원 및 임원들의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도 · 감독할

제13조(경비의 지원) -----  
----- 구립예술합창단 활동  
은 -----  
----- . ----- 활동 -----  
-----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 .